

‘26. 7.

김제전통시장 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경 제 진 흥 과

김제전통시장 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2026-60
번 호	

제출연월일 : 2026. 7. .

제 출 자 : 김 제 시 장

1. 추진배경

- 김제전통시장 주차장은 전통시장 이용객 편의 제공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해 운영 중인 주차장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및 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주차장 관리 및 운영을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바,
-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의거 김제전통시장 주차장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시설현황

- 시 설 명 : 김제전통시장 주차장
- 시설위치 : 김제시 요촌동 416-2, 419-1 일원
- 시설규모 : 면적 3,825㎡, 주차면수 107면, 주차관제시스템 1식
- 주 차 료 : 2시간 무료, 2시간 초과 시 유료(1일 최대 5,000원)

3. 주요내용

가. 추진근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 「김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4조·제35조
-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나. 위탁개요

- 위탁시설 : 김제전통시장 주차장
- 위탁기간 : 2026. 8. ~ 2029. 7.(3년)

- 위탁사무 : 김제전통시장 주차장 시설 관리 및 운영 전반
- 위탁방법 : 수의계약
- 수탁대상 : 김제전통시장 상인회
- 소요예산 : 비예산
 - 수익금은 시설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지출하고, 초과 수익금에 대해서는 시에 미리 승인을 받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경영혁신사업, 시장 활성화프로그램 운영사업 등 시장 활성화 사업 및 시설 유지보수에 사용

4. 추진상황

- 김제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주차관제시스템 1식) ----- '25. 9.

5. 금후계획

- 민간위탁 협약 체결 및 위탁관리 시행 ----- '26. 8.

6. 기대효과

- 김제전통시장 상인회의 주차장 시설 관리 및 운영으로 효율성 제고
- 전통시장 활성화 및 이용객 편의 증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7. 따로붙임

- 민간위탁 동의(안)
- 위치도
- 전북자치도 내 타 시·군 전통시장 주차장 운영 사례
- 주차장 요금표
- 관련법령 발췌서
- 방침결정문

김제전통시장 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김제시는 전통시장 이용객 편의 제공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해 운영 중인 김제전통시장 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을 실시하고자 하는 바, 김제시의회는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동의한다.

1. 민간위탁 실시

- ▶ 사유 : 전통시장 활성화 도모 및 효율적인 김제전통시장 주차장 운영

2. 민간위탁 개요

시 설 명	김제전통시장 주차장
소 재 지	김제시 요촌동 416-2, 419-1 일원
시설규모	면적 3,825㎡, 주차면수 107면, 주차관제시스템 1식
주 차 료	2시간 무료, 2시간 초과 시 유료, 10분당 200원(1일 최대 5,000원)

3. 민간위탁 추진계획

- 위탁근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 「김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4조·제35조
 -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 위탁기간 : 2026. 8. ~ 2029. 7.(3년)
- 위탁사무 : 김제전통시장 주차장 시설 관리 및 운영 전반
- 위탁방법 및 수탁대상 : 수의계약 / 김제전통시장 상인회

붙임2

위치도



붙임3

전북자치도 내 타 시·군 전통시장 주차장 운영 사례

시군명	시장명	운영방식	민간위탁 (공개모집/수익)	주차료 (무료/유료)	비고
전주시	남부시장	민간위탁	수익계약	최초 30분 무료 30분당 600원 1일 최대 5,000원	
군산시	주공시장	민간위탁	수익계약	최초 1시간 무료 30분당 600원 1일 최대 6,000원	
익산시	매일시장	민간위탁	수익계약	최초 30분 무료 30분당 500원 1일 최대 6,000원	
남원시	춘향골 공설시장	민간위탁	수익계약	최초 30분 무료 30분당 500원 1일 최대 6,000원	
무주군	반딧불시장	직영	-	최초 2시간 무료 30분마다 100원 1일 최대 2,000원	

※ 정읍시, 완주군, 진안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 직영 / 주차료 무료 운영

붙임4

주차장 요금표

1회 주차요금			1일 주차요금 (6시간 이상)	월 정기 주차요금	결제방법
최초 2시간까지	2시간 초과 후 기본요금	2시간 초과 후 매 10분마다			
무료	500원	200원	5,000원	40,000원	카드결제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장등의 상인 및 고객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설하였거나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시장이나 상권활성화 구역에 있거나 이웃한 것만 해당한다)을 주로 사용하는 경우 「주차장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대상이 되는 주차장 및 제20조에 따른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주차장에 대하여 「주차장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관리를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개설자 또는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또는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김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4조(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시장의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김제시장은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와 협약에 따라 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 화장실, 비가림시설 등의 시설물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35조(위탁관리) ① 김제시장은 시장·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및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김제시 주차장 조례」·「김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영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 또는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 관리할 수 있다.

② 김제시장이 시설물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5.>

③ 제2항에 따른 협약체결 내용은 위탁관리의 대상범위 및 위탁 관리기간·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 납부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37조(사용료 및 경비 징수 등)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공영주차장 및 공중화장실의 경우 관련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및 필요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37조의2(수익금의 사용) ① 수탁자는 위탁에 따른 수익금(이하 “수익금”이라 한다)을 우선 해당 시설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지출하고, 초과 수익금에 대해서는 김제시장에게 미리 승인을 받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경영혁신사업, 시장 활성화프로그램 운영사업 등 시장 활성화 사업 및 시설 유지보수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기간 만료나 취소 등으로 수탁이 종료될 경우 기간 내에 미사용 수익금을 김제시 세입으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다시 수탁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20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료를 관리위탁받은 행정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김제시 주차장 조례

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법 제8조제2항, 법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

3. 비영리 법인 또는 자원 봉사단체

4. 해당 전통시장 상인단체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자격, 선정기준, 선정방법 등은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외포일성 100주년을 기념하여
비상하는 김제

문서번호	경제진흥과-32213
보존기간	5년
보고일자	2026. 6. 23.

주무관	팀 장	과 장	국 장	부시장	시 장	결 재
김세웅	김은경	김영복	김영민	이영재	김영민	
협 조						

- 전통시장 활성화 및 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
김제전통시장 주차장 민간위탁 추진 계획(안)



김 제 시
경 제 진 흥 과